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야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발굴하여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 활성화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근거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야간관광 자원의 개발 및 발굴을 통해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포함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야간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간 관광 중심의 기존 관광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숙박·요식업·문화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임.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도지사의 책무,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홍보·마케팅 등의 정책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야간관광 활성화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야간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